

「평창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
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8. 22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8. 30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9. 2(금)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 박태영)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근거 조항 재정비 함(안 제11조제1항)
 - 현재 군수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“500미터 이내”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를 “1킬로미터 이내”로 확대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전통산업 보존구역의 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 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하는 것임.

○ 본 조례안은 기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